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008. 10. 21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 각종 동물실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의료원은 제외한다)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4 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담당하고 동물실험신청서 심의 및 통보 등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권한 및 책임)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심의 등) ①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동물실험승인신청서 등은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및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3.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4.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5.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6.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7.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8.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 ⑤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0 조 (승인 및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08. 10. 21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